#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재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617

발의연월일: 2020. 11. 20.

발 의 자: 송재호·신정훈·송언석

임호선 · 주철현 · 이광재

강훈식 · 송기헌 · 서삼석

양정숙 · 박완주 · 이병훈

김성주 • 안홍영 • 김회재

우워식 • 이장섭 • 이해식

송영길 · 김영배 · 박범계

김수흥ㆍ허 영ㆍ한준호

의원(24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와 혁신도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, 이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음.

한편,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에 따르면,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는데, 이 회계는 지역자율계정, 지역지원계정,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성하고 있음.

최근 국가균형발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

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등 국가균형발 전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정을 혁신도 시 발전에 투입하는 등 거시적 측면에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효율적 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.

이에 현행법에 따른 혁신도시특별회계를 삭제하고, 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혁신도시계정으로 편입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임(안 제33조부터 제40조까지 삭제).

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송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」 (의안번호 제5620호), 「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」 (의안번호 제56 18호) 및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」 (의안번호 제5624 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 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#### 법률 제 호

##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장(제33조부터 제40조까지)을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의 2020회계연도 세입·세출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  - ②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202 0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2021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혁신 도시계정의 세입으로 이입한다.
- 제3조(재산 등의 승계) 종전의 이 법에 따른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 및 채권·채무는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혁신도시계정이 승계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장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	<u>&lt;삭 제&gt;</u>
제33조(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	<u>&lt;삭 제&gt;</u>
설치 및 관리・운용) ① 공공	
기관의 지방이전, 혁신도시의	
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을	
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	
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(이하	
"회계"라 한다)를 설치한다.	
② 회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이	
관리・운용한다.	
③ 회계의 세출예산은 중앙관	
서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.	
제34조(회계의 세입과 세출) ①	<u>&lt;</u> 삭 제>
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	
<u>같다.</u>	
1. 국가소유 종전부동산의 매각	
대금, 사용료, 해당 재산으로	
부터 발생하는 그 밖의 수익	
금 및 국가행정기관인 이전공	
공기관의 임차보증금 회수금	
2.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	
계로부터의 전입금	
3. 「공공자금관리기금법」에	

따라 설치된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전입금 및 예수금

- 4.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 급
- 5.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의 전입금
- 6. 그 밖의 수입금
-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신축 비 등 이전비용에 대한 지원
- 2.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등 혁신도시건설 비용
- 3.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
- 4.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
- 5.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손실금의 보전
- 6. 혁신도시의 건설 및 제도발 전을 위한 조사·연구비
- 7. 이전공공기관의 이전비용 및

  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

  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에 필

요한 자금의 융자

- 8. 제45조의2에 따른 연구기관, 국제기구, 종합병원 및 대학 의 시설 건축에 필요한 비용
- 9. 제45조의3에 따른 지식산업 센터의 설립 및 자금지원에 필요한 비용
- 10. 혁신도시 정주환경 개선비 용에 대한 지원
- 11. 이전공공기관 연관산업 기 업 등 유치 비용에 대한 지원 12. 그 밖의 공공기관 지방이 전, 혁신도시의 조성 및 발전 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항목에의 지출

제35조(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 | <삭 제> 계 등으로부터의 전입) 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 회계,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 으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. 제36조(차입금) ① 회계의 세출재 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 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.

<삭 제>

② 회계는 그 지출을 위한 자 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 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 을 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일시 차입금의 원리금은 그 회계연 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.

제37조(예비비) 회계는 예측할 수 | <삭 제>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 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 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

제38조(세출예산의 이월) 회계의 | <삭 제> 세출예산 중 그 회계연도 이내 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「국 가재정법 | 제48조에도 불구하 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 할 수 있다.

제39조(잉여금의 처리) 매 회계연 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 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 에 이입한다.

제40조(재산의 관리전환 등) 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 에 속하는 종전부동산을 회계 로 관리전환 또는 이관하는 때

<삭 제>

<삭 제>

에는 「국유재산법」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할 수있다.

② 회계가 조성·취득한 청사 및 부지 등은 「국유재산법」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국가기 관이 관리·운용하는 특별회계 로 무상으로 관리전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다.